

예 산 총 칙

201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26,210,372	9,786,311
일반회계	262,779,679	7,883,390
특별회계	63,430,693	1,902,921
공기업특별회계	22,714,726	681,442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22,714,726	681,442
기타특별회계	40,715,967	1,221,479
의료급여기금운영	1,722,656	51,680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192,655	35,78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50,000	1,500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10,241,990	307,260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1,970,221	359,107
농공지구조성사업	339,726	10,192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15,190,000	455,700
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	8,719	26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88,76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